

의안번호	제 호	의결사항
의결 연월일	2023. . . (제 회)	

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정
일부개정령안

제출자	국무총리 (인사혁신처 소관)
제출 연월일	2023. . .

법제처 심사 전

1. 의결주문

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.

2.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영아기 부모육아휴직제 확대 등 민간의 육아휴직수당 개선방향에 맞춰 공무원의 동일자녀 두 번째 육아휴직자에 대한 수당지급 특례기간 및 특례기간에 대한 월 지급액 상한을 확대하는 한편,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노동조합 업무에 대한 근무시간 면제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면제자에 대한 수당 지급방법 등 필요한 사항을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도록 위임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

3. 주요토의과제

없 음

4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 략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기획재정부 등과 합의되었음

라. 기 타 : 1)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
2) 입법예고(2023. 11. 8. ~ 12. 18.) 결과, 특기할 사항 없음

3) 행정규제 :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, 이견 없음

- 규제 신설·폐지 등, 없음

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

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1조의3제2항제1호가목 전단 중 “3개월째까지”를 “6개월째까지”로 하고, 같은 목 후단 중 “250만원”을 “1개월째는 200만원, 2개월째는 250만원, 3개월째는 300만원, 4개월째는 350만원, 5개월째는 400만원, 6개월째는 450만원”으로 하며, 같은 호 나목 중 “4개월째”를 “7개월째”로 한다.

제19조에 제1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⑭ 「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」 제7조의2, 「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」 제5조의2에 따른 근무시간 면제자 및 「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」 제24조에 따른 근로시간면제자인 공무원의 수당등 지급방법과 세부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인사혁신처장이 정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육아휴직수당에 관한 적용례) 제11조의3의 개정규정은 2024년 1월 1일 전에 부모 중 한 명이 육아휴직을 하고 2024년 1월 1일 이후에

부모 중 다른 한 명이 같은 자녀에 대하여 육아휴직을 시작한 경우에도 적용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11조의3(육아휴직수당) ① (생략)	제11조의3(육아휴직수당) ① (현행과 같음)
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이 육아휴직을 한 경우에는 육아휴직수당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으로 한다.	②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
1. 같은 자녀에 대하여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한 경우로서 두 번째 육아휴직을 한 사람이 공무원인 경우 해당 공무원: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산정한 금액	1.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
가. 육아휴직 시작일부터 <u>3개월째까지</u> : 육아휴직 시작일을 기준으로 한 월봉급액에 해당하는 금액. 이 경우 그 상한액은 <u>250만원</u> 으로 한다.	가. ----- <u>6개월째까지</u>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<u>1개월째는 200만원, 2개월째는 250만원, 3개월째는 300만원, 4개월째는 350만원, 5개월째는 400만원, 6개월째는 450만원</u> -----.
나. 육아휴직 <u>4개월째부터 12</u>	나. ----- <u>7개월째</u> -----

개월째까지: 제1항에 따른 금액 2. (생략) ③ ~ ⑧ (생략) 제19조(수당등의 지급방법) ① ~ ⑬ (생략) <u><신설></u>	----- --- 2. (현행과 같음) ③ ~ ⑧ (현행과 같음) 제19조(수당등의 지급방법) ① ~ ⑬ (현행과 같음) ⑭ 「<u>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</u>」 제7 조의2, 「<u>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</u>」 제5 조의2에 따른 근무시간 면제자 및 「<u>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 법</u>」 제24조에 따른 근로시간면 제자인 공무원의 수당등 지급방 법과 세부 기준 등에 관하여 필 요한 사항은 인사혁신처장이 정 한다.
--	---

< 의안 소관 부서명 >

인사혁신처 성과급여과	
연 락 처	(044) 201 - 8397